

화재위험성 평가표

(5쪽 중 1쪽)

대상명 (선정기준)	주소	건물구조(층수)
(필수-1-)①)		
총점(정량×정성)	정량평가	정성평가

방법	대 분 류			세 부 분 류
	대 항 목	총점	결과	평 가 내 용
① 정 량 평 가	1. 화재이력 및 안전관리	20		① 최근 n년 간 화재발생 이력이 있는지 확인 4점 : 3년 이상 화재 발생 이력 없음 3점 : 2년간 화재 발생 이력 없음 2점 :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최근 n년 간 소방서로부터 행정처분, 과태료, 과징금,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이 없을 것 4점 : 3년 이상 처분 사항 없음 3점 : 2년간 처분 사항 없음 2점 :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최근 n년 간 소방특별조사 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이상 없을 것 4점 : 3년 이상 소방특별조사 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중 대 불량사항이 없고 조치명령 발부 후 보완 연기 신청 이 력이 없을 것 3점 : 2년간 소방특별조사 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중대 불량사항이 없고 조치명령 발부 후 보완 연기 신청 이력이 없을 것 2점 :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※ 중대불량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의 소방시설 관련 불량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함 ④ 소방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화재위험성 정도를 인정하는 경우

				8점 : 소방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화재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6점 : 소방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화재위험성이 보통이라 인정하는 경우 4점 :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-	--	--	--	---

(5쪽 중 2쪽)

방법	대 분 류			세 부 분 류
	대 항 목	총점	결과	평 가 내 용
② 정 성 평 가	1. 이용자·거주자·수용자의 특성	10		건축물의 이용자, 거주자, 수용자 특성(주취, 노유자, 피난약자)을 평가한다. ① 주취자 이용(단란주점, 유흥주점 등) ② 수용인원 밀도 높음(30인 이상) ③ 영유아 이용(어린이집, 키즈카페 등) ④ 노약자 이용(산후조리원, 노인돌봄센터 등) ⑤ 장애인 이용(장애인복지관, 장애인시설 등) 10점 : 평가항목 해당사항 없음 5점 : 평가항목 2개 이하 1점 : 평가항목 3개 이상 (기타 이용자 특성에 대하여 평가자가 점수 조정 가능)
	2. 위험물, 가스, 가연성물질, 등의 저장·취급 여부	5		가연물의 저장량, 저장방법과 취급의 적정성 그리고 관리상태 등에 대해 평가한다. ① 다수의 가연물 저장(가구류/설치 장식물 등) ② 화재하중이 큰 가연물 저장·취급(위험물 등) ③ 가연물 적재방법 부적합(가연물 쌓아두는 등 정리되지 않음) ④ 가연물 관리상태 부실(가연물 방치 등) 5점 : 평가항목 해당사항 없음 3점 : 평가항목 2개 이하 1점 : 평가항목 3개 이상 (기타 가연물의 저장량, 관리상태, 특이 가연물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 조정 가능)
	3. 점화원 관리	5		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소의 종류와 양 및 관리상태를 평가한다. ① 흡연 가능 ② 조리시설(식당, 급식) 설치 ③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 사용 ④ 분전반, 배전반 관리상태 불량

			⑤ 화목보일러 사용 ⑥ 이동식 조리기구·난방기구 사용 ⑦ 사용하는 점화원의 안전조치 부적합 5점 : 평가항목 해당사항 없음 3점 : 평가항목 2개 이하 1점 : 평가항목 3개 이상 (기타 점화원의 종류 및 관리상태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 조정 가능)
--	--	--	--

(5쪽 중 3쪽)

방법	대 분 류			세 부 분 류
	대 항 목	총점	결과	평 가 내 용
	4. 경보설비	5		건축물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적응성, 감지기의 위치, 발신기 및 경종 등 경보장치, 수신기의 위치 및 조작의 적정성 및 편의성 등을 평가한다. ① 감지기 탈락 ② 적응성 없는 감지기 설치 ③ 빈번한 비화재보 발생 ④ 접근 어려운(비 상주) 장소에 수신기 설치 5점 :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3점 : 평가항목 2개 이하 해당 1점 : 평가항목 3개 이상 해당 또는 ① 감지기 없음에 해당 (기타 감시 시스템의 설치위치, 수동경보(발신기 등)장치에 대한 접근성, 위치, 보행거리, 비상구인근에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조정 가능)
	5. 소화설비	5		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(밸브, 배관 및 기타구성요소들의 적합성, 접근성, 헤드의 누락, 설치위치 및 방식의 적정성, 살수장애 등)에 대해서 평가한다. ① 소화설비의 폐쇄·차단·잠금(방치) ② 스프링클러헤드의 누락 ③ 소화약제 기동용기 차단, 밸브차단, 경보설비의 스위치 차단 등 설치기준 부적합 ④ 살수 또는 방수장애

				5점 :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3점 : 평가항목 2개 이하 해당 1점 : 평가항목 3개 이상 해당 또는 ① 소화설비(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) 미설치 해당 (기타 소화기, 옥내소화전 등 수동소화설비의 설치상태, 적응성, 유지관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조정 가능)
--	--	--	--	---

방법	대 분 류			세 부 분 류
	대 항 목	총점	결과	평 가 내 용
	6. 피난시설	4		건축물에 피난경로의 명확, 단순성 및 출구의 경로 수와 폭, 출구까지의 보행거리를 평가한다. ① 경유거실을 통한 피난 ② 내부 공간 구획 ③ 잠금장치로 인한 피난 지연 ④ 양방향 피난 불가 ⑤ 피난안내도 부착 부적절 또는 미부착 ⑥ 피난동선이 구조상 복잡 ⑦ 비상구 미확보 또는 부적절 4점 : 평가항목 해당사항 없음 2점 : 평가항목 2개 이하 1점 : 평가항목 3개 이상 (기타 피난 용이성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 조정 가능)
	7. 화재취약 계절·기간, 야간(22:00~익일 06:00)에 근무자 배치	4		건축물에 화재안전대응 전략을 평가한다. 4점 : 자체소방조직을 구성하고, 소방매뉴얼 작성관리,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,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3점 :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2점 :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, 자체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 1점 :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흡 (기타 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, 근무년수, 안전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가감 가능)
	8. 소방관서와 거리, 소방도로 확보, 소방차 접근성	4		건축물과 소방서와의 거리, 소방도로의 확보를 평가한다. ① 소방차(고가·사다리차 포함) 부서·전개 불가능 ②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우려 ③ 소방도로의 폭이 6m 미만 ④ 소방차 회차 불가능 ⑤ 200m 이내 소방용수시설(공설, 사설) 미확보 ⑥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의 거리 2km 이상 (다만 군(郡) 지역 소재 소방서·119안전센터·119지역대는 5km 이상)

				4점 :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2점 : 평가항목 1개 해당 1점 : 평가항목 2개 이상 해당 (기타 도로환경, 건축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조정 가능)
--	--	--	--	---

(5쪽 중 5쪽)

방법	대 분 류			세 부 분 류
	대 항 목	총점	결과	평 가 내 용
	9. 건축물 내·외부의 마감재, 방화구획, 건축물 사용년수	4		건축물 내·외부 마감(내화, 방화재료, 방염)의 적절한 시공과 유지관리에 대해 평가한다. 4점 : 불연 및 준불연재료 적용 2점 : 난연 및 방염(법적 기준 이상) 적용 1점 : 샌드위치패널, 드라이비트 또는 필로티 구조 (기타 마감재료의 특성, 관리상태, 내구연한, 방화구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 조정 가능)
	10. 창문의 구조 위치·수량 및 개방 가능성	4		건축물에 소화활동을 위해 필요한 창문의 구조, 위치, 수량 및 개방 가능성을 평가한다. ① 창문파괴 불가능 ② 무창층 ③ 창문개방 불가능 ④ 소방차 부서위치와 창문위치 불일치 ⑤ 창문간의 이격거리 과다 4점 :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2점 : 평가항목 1개 해당 1점 : 평가항목 2개 이상 해당 (기타 소방대 진입 원활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조정 가능)

※ 비고

- 소방기관의 장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의 평가항목, 총점 등을 변경하거나 가점부과 등 평가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가점 : 최대 20점
 - ① 법정 소방시설 외에 추가 소방시설 설치
 - ② 감지기(불꽃·아날로그 또는 다신호식방식 감지기 등) 등을 우수품질 소방용품으로 설치
 -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(선임기준을 초과하여 선임)
 - ④ 자체소방대 운영 또는 방재실 설치·운영(24시간 근무)
 - ⑤ 화재자동감시 및 통보가 가능한 IoT기기 설치
 - ⑥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-
- 수용인원은 시설별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, 승인, 인가된 인원으로 하고 별도의 수용인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7의 수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